

#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2(2020.11.29.) 에 따른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1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2 적용 대상

-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3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의3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분) 운송 수단 이용자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3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② (지자체) 관내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운송수단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 운송 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 이용자 수칙

- ▶ 마스크 착용
-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운송수단에 대해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운송 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지역 내 신발적 발생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권역별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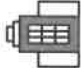



전국적 유행 단계  
(전국적 대응)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준수사항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기밀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주요 방역조치 1. 다중이용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증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주요 방역조치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마스크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